

2026년 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채용 공고

우리 위원회에서 근무할 청년인턴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.

2026년 7월 31일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

1. 선발예정인원 (2개 분야, 총 6명)

지원코드	채용 분야	선발인원	근무예정부서(근무지)
인턴01	일반행정	3명	국민권익위원회 본부(세종특별자치시)
인턴02	조사행정	1명	국민권익위원회 본부(세종특별자치시)
인턴03	일반행정_서울	1명	정부합동민원센터(서울특별시)
인턴04	일반행정_청주	1명	국가청렴권익교육원(충청북도 청주시)

※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(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)

※ 지원코드 '인턴01'은 담당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일괄 채용하고, 합격자의 희망부서, 부서 요청사항 등에 따라 배치

가. 근무조건

- (신 분)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
- (계약기간) 채용일('26. 9월 중 예정)로부터 3개월
- (보 수) 시급 10,320원, 월 2,156,880원(세전,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)
- (근무시간) 주 5일, 주 40시간(1일 8시간 근무)
- (후생복지) 4대보험(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) 가입

나. 주요 업무 내용

- 담당업무 수행 및 정책참여 활동(권익위 주관행사) 등

지원코드	채용 분야	근무부서	담당 업무
인턴01	일반행정 (3명)	운영지원과	○ 정보자료실 관리(사서 업무) ○ 간행물(도서) 구입 및 도서분류체계에 따른 분류·등록·비치 ○ 도서 및 정보자료 열람·대출 등
		행동강령과	○ 공공기관 행동강령 제개정 현황 조사 ○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 실태 점검 및 현장 확인 지원 ○ 행동강령 사건 관련 통계 분석 및 관리 ○ 행동강령 위반 관련 판례 및 해외 사례 조사 지원
		제도개선총괄과	○ 제도개선 실태조사 업무 지원 ○ 제도개선 이행점검 업무 지원
인턴02	조사행정	경찰민원과	○ 민원 배정 지원 ○ 이송민원 등 등기 우편물 관리 ○ 소위원회 안건 상정 지원 ○ 조사관 민원상담 지원 ○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 행사 등 서무 지원
인턴03	일반행정_서울	일반상담총괄과	○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 민원상담 지원 ○ 온라인 민원상담 중 불합리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지원 ○ 다수기관복합민원 조정을 위한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지원 ○ 부서 실적 통계관리 등 서무 업무 지원 ○ 기타 행정업무 지원 등
인턴04	일반행정_청주	교육운영과	○ 국민권익위원회 학술지『권익』 발간 업무 지원 - 학술지 권익 발간 관련 논문 심사 및 판정 관련 행정업무(논문 접수, 등록, 결과 유지 등) - 학술지 권익 발간 관련 편집위원회 운영시 회의 준비 - 학술지 권익 발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대표 누리집 관리 - 학술지 권익 발간 관련 행정처리 관련 보조 ○ 청렴연수원 교육운영(계획, 준비, 운영, 결과)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조

※ 참여 활동 내용은 추후 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2.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

가. 응시자격 요건 ※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'26.8.27.) 기준

- 「청년기본법」상 청년(19세이상~34세이하)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
 - ※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'제대군인' 및 「병역법」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'사회복무요원'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
 - ▶ 군복무기간 1년미만 : 1세 / 1년이상 ~ 2년 미만 : 2세 / 2년이상 : 3세 연장
- 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」 제25조의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규정된 취업제한 사유가 없는 자

< 관련근거 >

「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」

제25조(채용결격사유 등 확인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(이하 "비위면직자등"이라 한다)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(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·공립학교를 포함한다)
 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○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
<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(이해충돌방지법§11①) >

1. 소속 고위공직자
2.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
2.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3.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

○ 지원하려는 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

○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참여횟수가 2회 미만인 자

- 단, '23 ~ '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1회 참여 기회 허용

※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청년인턴 참여 이력을 반드시 기재하고,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누락·허위 작성 시 합격 취소될 수 있음

※ 고용보험 이력 중 '중앙부처 청년인턴 제도' 외의 근무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경력증명서 등)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나. 가점 **※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, 원서접수 마감일('26.8.10.)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만 인정**

항목	관련 법령	부가 점수
법정 가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「보훈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~10% (지원코드별 채용 인원이 4명 미만 이므로 법정 가점 미적용)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서류전형 만점의 3%

※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

※ 취업지원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에 본인이 사전 확인하여야 함

3. 시험 방법

가. 서류전형

-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-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한 경우, 서류전형 기준*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(동점자는 배수를 초과하더라도 모두 합격 결정)
 - * 서류전형 기준 : 1. 인턴지원서, 2. 가점
 - ※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가 지원한 경우, 응시자격 충족여부만 확인하여 모두 합격자로 결정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: 2026. 8. 18.(화) 예정
 - 청년인재DB 및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(<https://www.acrc.go.kr>)에 2차 면접 일정 등 게재 예정

나.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'정책제안서'를 제출받아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정책제안서 주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정책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며,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뉴스 등을 참고
 - * 정책제안서는 별도 제출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미제출 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
- 개별 질의·응답(인턴지원서, 정책제안서 토대)을 통해 평정요소를 상(上), 중(中), 하(下)로 평정하여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'중', '하'의 개수와 관계없이 '상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, '상'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'중'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
 - ※ 동점자 처리 : 취업지원대상자 >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> 서류전형 성적 순

< 평정요소 >

- ① 참여의지 및 진로 연계성 : 인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의, 진로계획과의 연계 정도
- ②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 : 기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 수준, 전문성 확보 여부
- ③ 정책제안의 참신·실현가능성 : 정책제안서의 문제 인식, 아이디어의 참신성, 실현 가능성
- ④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 : 질문에 대한 응답의 명확성, 면접 태도
- ⑤ 공직에 대한 책임감 및 윤리의식 : 공무수행에 대한 태도, 책임감, 공정성 등 자세

-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요소 이상을 ‘하’로 평정한 경우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
-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임용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, 불합격 사유가 없는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-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4. 시험 일정

- 시험공고 : 2026. 7. 31.(금) ~ 8. 10.(월)
- 원서접수 : 2026. 7. 31.(금) ~ 8. 10.(월), 18:00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: 2026. 8. 18.(화)
- 서류전형 합격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: 2026. 8. 18.(화) ~ 8. 24.(월), 18:00
- 면접시험일 : 2026. 8. 27.(목)
 - ※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이며, 서류전형 합격 인원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
- 최종 합격자 발표일 : 2026. 9. 7.(월)
 - ※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,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, 나라일터(www.gojobs.go.kr)에 공고
 - 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,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※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, 포기, 채용된 후 퇴직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5. 응시원서 제출 및 제출서류 안내

가. 접수 방법

- 접수기간 : 2026. 7. 31.(금) ~ 8. 10.(월), 18:00
- 접수방법 : 청년인재DB 내 '청년인턴 채용' 공고에 신청
 - * 신청 전 청년인재DB(www.2030db.go.kr)에 가입 필요
 - * (원칙) 청년DB로 원서를 제출하며, e-mail 및 등기우편으로 원서접수 불가
 - * (예외) 지원 자격 기준일('26.8.27.)에 만 19세가 되는 자[지원 시점에 청년DB 회원가입이 불가능한 자(만 18세)]는 전자우편(jhsw104@korea.kr)으로 제출
- ※ 본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(응시원서 등 포함)을 사용하며, 별도 양식으로 제출 금지
- ※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, **분할·중복 접수 불가 및 우편 접수는 받지 않음**

나. 제출 서류

- 가. 아래 제출 서류 중 ①, ③, ④번의 경우, 서명란에 반드시 **자필로 서명**해야 함
- 나. **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**을 반드시 확인
- 다. 공통서류 전체를 순서에 따라 스캔하여 **하나의 PDF 파일로** 제출
- ※ **파일제목 : 국민권익위원회 제3기 청년인턴 지원서류 제출(지원자 성명)**

구 분	제출 서류
공통 (필수)	① 응시원서 1부 : [붙임1] 서식
	② 청년인턴 지원서 1부 : [붙임2] 서식
	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: [붙임4] 서식
	④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: [붙임5] 서식
	⑤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1부 : [붙임6] 발급방법 참조 ※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 확인용(2회 이상 여부)
	⑥ 주민등록초본(남성의 경우, 병역사항 포함)
서류전형 합격자 (해당자)	⑦ 정책제안서 ⑧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⑨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⑩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

	- 장애인 : 장애인증명서 1부 -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에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등 지원기간이 명시된 서류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- 북한이탈주민 :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⑪ 상한 연령을 연장하는 경우 증빙서류 ⑫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집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등 ※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필요서류 상세 별도 공고
--	---

6. 유의 사항

- 동일한 기간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,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공통(필수)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,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채용서류의 거짓작성,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제5장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장, 「형법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,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.

-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사유,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.
- 응시자가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 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(최종 합격자의 경우,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)하며,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파기합니다.
-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붙임7)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
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(☎044-200-71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붙임1> 응시원서

응시원서

1. 지원 분야

응시번호	담당자기재	지원코드		채용분야	
------	-------	------	--	------	--

2. 인 적 사 항

성명		생년월일	
주소 (도로명)	(우)		
휴대전화		이메일	

3. 가 산 요 건

※ 아래의 내용중 해당사항에 ☒ 표기 하십시오

☐ 취업지원대상자(5%)☐ 취업지원대상자(10%)☐ 사회형평대상자

4. 희 망 부 서

1순위	2순위	3순위

4.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

중앙행정기관명	실제 근무지	근무기간	합산 기간
예 : 산림청	국립수목원	2025.3.4.~2025.8.31	6개월

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1. 「응시번호」란은 응시자가 기재하면 안 됩니다.
2. 가산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,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

응시원서 작성요령

1.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2. 『응시원서』는 아래의《작성요령》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《 작 성 요 령 》

- ① **응시코드** :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
- ② **지원코드 및 채용분야** : 공고문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와 채용분야 기재
(예) 지원코드 : 인턴01 채용분야 : 행정·법무
- ③ **성명, 생년월일** : 해당란에 정확하게 기재
(예) 성명 : 홍길동 생년월일 : 2001.10.15.
- ④ **주소** : 현재 거주하는 곳(우편물 수령 등)을 정확히 기재함
- ⑤ **전자우편·(휴대)전화** :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
- ⑥ **가산요건** :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 등은 해당란에 ✓ 표시
- ⑦ **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근무 이력** : '23년부터 현재까지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(근무 기간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상 취득일~상실일 기준으로 산정)

청년인턴 지원서

응시번호		지원코드		채용분야	
성명		생년월일		연락처	휴대전화
					이메일

◎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

- 해당 기관 및 직무에 지원하게 된 계기
- 향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, 이 인턴 경험이 진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서술

◎ 직무 관련 전문성 획득을 위한 활동 내용

- 지원한 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활동 및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
- 출신학교, 자격증, 시험(어학 등) 성적 등은 언급하지 말고 행동과 경험 중심으로 작성

◎ 문제 해결 경험

- 일상생활, 학교, 아르바이트, 동아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했던 경험 서술
-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와 그 결과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서술

◎ 소통 및 협업 능력

- 타인과 협력하여 성과를 낸 경험 서술

◎ 기대하는 점 및 각오

- 인턴ships을 통해 배우고 싶은 점과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지 서술

○ 청년인턴 지원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 작성 금지
- 학력, 자격증, 시험성적 등 작성 금지
- 작성 금지사항을 기입할 경우 탈락 등 불이익 조치 가능
- 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<붙임3> 정책제안서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)

정책제안서

지원분야		성 명		연락처		e-mail	
-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---	--

제 목	청년이 보는 00 정책 ※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지원한 분야의 정책·사업·제도(예: 복지, 노동, 산업, 금융 등)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작성
제안 배경 및 문제점(현황)	
개선안 또는 정책대안	
예상 효과	

○ 정책제안서 작성요령

-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되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(글자크기 : 11, 글자체 : 맑은고딕, 줄간격 : 120%)
- 지원한 기관의 주요 정책 중 청년의 시각에서 느낀 문제점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작성
- * 기관 업무에 대한 관심도와 정책참여 의지를 보기 위한 것으로,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
- ※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

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

성명	생년월일

목 록	해당여부
① 피성년후견인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☐ 해당 ☐ 해당없음
⑫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11조에 따른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	☐ 해당 ☐ 해당없음

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6. . 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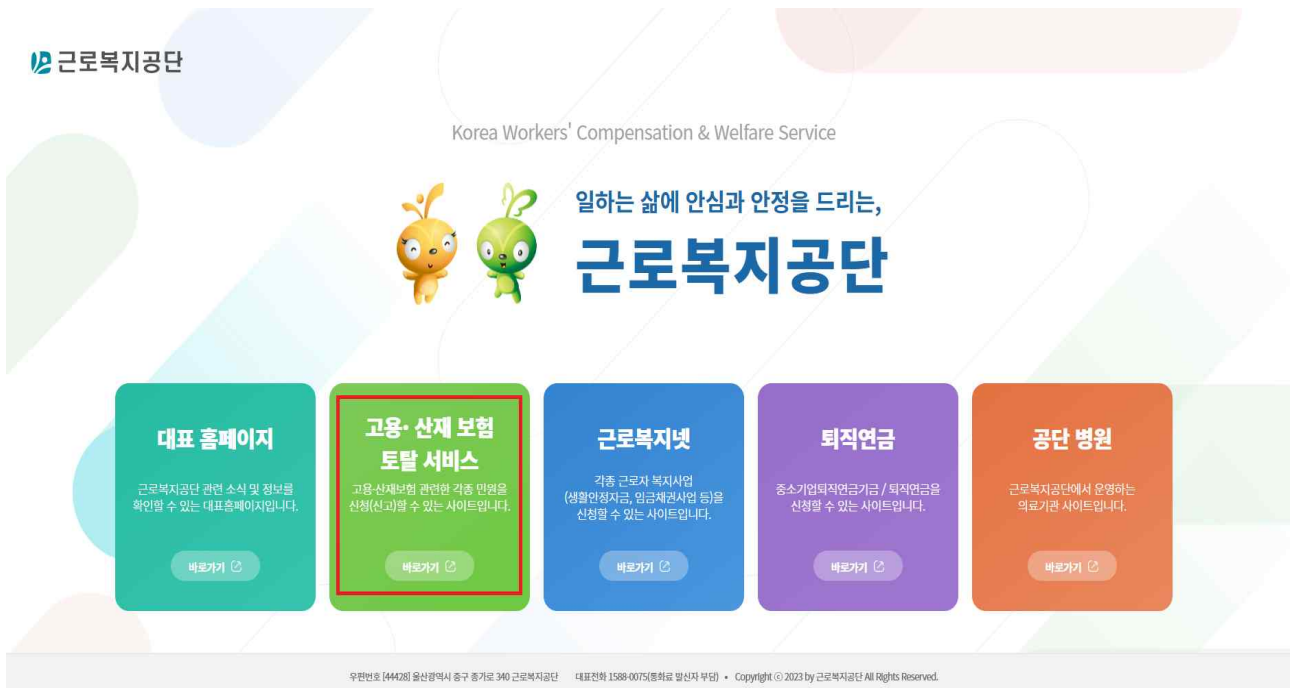
성명 :

(서명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<붙임6>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온라인 발급방법

① 근로복지공단 '고용·산재 보험 토탈 서비스' 접속 (<https://total.comwel.or.kr>)



② 개인 → 일반근로자 선택 →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이용 로그인

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 **!**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권장합니다.

사업장	사무대행	의료기관	개인
☒ 일반근로자 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 ☐ 산재근로자 ☐ 대리인(간이대지급금/심사청구/구상금협의조정/최초요양급여신청)·유족 주민등록번호: 123456 - ☒ 개인정보 이용 및 고유식별 정보처리 동의 공동인증서 로그인 간편인증 로그인 			

•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공동인증서(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) 또는 간편인증(주민등록번호)으로 로그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•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어 간편인증서비스를 지원합니다.
- 간편인증 사업자: 카카오페이, 통신사PASS, 한국정보인증(삼성PASS), KB국민은행, NHN페이코, 신한은행, 네이버, 토스,뱅크샐러드, 하나은행, 농협, 드림인증
- 간편인증 요청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간편인증 화면의 안내문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인증서암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하시고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• 여러개의 사업장 공동인증서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별도의 구분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하니 관리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•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 하시기 바랍니다.(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약 60분 동안 화면 이동이 없을 경우 자동 로그아웃됩니다)
•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발급하시려면 개인 > 일반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(노무제공자)·예술인 선택 후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.
• 토탈서비스는 모바일 환경(모바일 웹, 앱)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③ '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' 선택

근로복지공단
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
사업장 사무대행기관 의료기관 **개인**

[일반근로자] 박정연 님

민원접수/신고 정보조회 전자통지 증명원 신청/발급 업무상질병판정 심사청구

자주 찾는 서비스

개인

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개인별 부과고지보 험료 조회

One-Click 산재상담 및 신청

심사청구서 작성

토털서비스 이용안내서 다운로드

공지사항

연간 정기직업으로 인한 토탈서비스 일시중지 계획 알림(2025.01.04)

산재보험 화상인증의료기관 (재)인증 결과 알림

(겨울철 비상진료 한시적용-대상기관) 산재보험 적용 대상 의료기관 안내

(겨울철 비상진료-한시적용) 겨울철 비상진료 지원방안 관련 산재보험 적...

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

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

알림창

2025년 최저임금

시간급 10,030 원

월 환산액 2,096,270 원

(주 40시간 기준, 유급주휴 8시간 포함)

본의사항은 국면 없이 1350

최저임금위원회

④ 보험구분 중 '고용' 선택 → 조회구분 중 '상용' 선택 → 조회

⑤ 직종포함여부 '예' 선택 → '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전체 이력 인쇄)' 신청 선택

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Home > 증명원 신청/발급 > 고용·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
메뉴숨김 화면인쇄 화면인쇄 안내

+ 마이메뉴 추가

*는 필수입력 항목입니다.

본 자료는 고용산재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고용산재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· 보험구분 ☐ 산재 ☒ 고용

· 조회구분 ☒ 상용 ☐ 일용

조회

● 이력내역서 발급

직종포함여부 ☒ 예 ☐ 아니오

① 내역서 발급을 위해서는 위의 [자격관리 상세이력]에서 해당 이력을 선택 하셔야 합니다.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(개별사업장)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개별사업장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고용/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
- 고용/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선택 사업장에 대한 이력 인쇄

신청 메일전송

☐ 산재보험 ☒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(근로자용/피보험자용)					
발급번호	0000-2025-01	55	발급일자	2025년 01월 03일	접수번호 0000-2025-7 J
신청인	성명	박		생년월일	년 10월 30일
조회기간	전체 (조회기간 총 2개 이력 중 2개 이력 선택 발급 요청)				
일련번호	직종명(코드)	사업장 명칭	취득일/전근일	상실일	비고
1	정부·공공 행정 사무원(025)	국무조정실	2024-09-02		근로자
2					근로자
※ 본 자료는 산재보험·고용보험 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근로자/피보험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, 경력증명 또는 타기관 제출 등 산재보험, 고용보험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- 이 증명원은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 민원실과 금융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에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. (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장소는 정부24에서 확인 가능) - 발급 증명원의 진위여부 확인은 「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-국민소통-민원/조회-증명원 진위확인」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					
위와 같이 자격내역을 알려드립니다. 2025년 01월 03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					



<붙임7>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 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2026 년 월 일

청구인 (서명 또는 인)

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

공지사항

- 1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 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2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3.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